



**hanalaw**

Corporate Rehabilitation



# 기업회생

Corporate Rehabilitation

# 기업회생

Corporate Rehabilitation

## 개념

일시적 재정파탄으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있는 기업에 관하여 그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이익인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을 현재 청산할 경우 남는 재산적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법원에서 심사한 후 회생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상당 부분을 탕감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탕감된 채무를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을 재건하는 절차로서, 기업인수합병(M&A)의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영업양도나 자산양도, 신주발행과 제3자 인수 등의 방법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 회생신청의 장점



Corporate Rehabilitation

## 신청권자와 관할 법원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사가 신청권자인데,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편,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주주 역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입니다.

## 회생절차의 주요 사항

### 1. 회생개시 신청에 따른 채무자 재산보전과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

회생개시신청 시 재산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합니다. 재산보전처분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고,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 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2. 회생개시결정의 효과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은 회생과 무관하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3.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효력발생

채무자가 회생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채무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액 기준 3/4의 찬성, 회생채권자는 2/3의 찬성, 주주는 1/2의 찬성이 있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고, 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합니다.

법인회생절차 순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인 및 조사위원 선임)

**채무의 확정 및 기업가치의 조사**  
(회생채권 등 목록 제출, 회생채권 등 신고,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회생계획 인가** (불인가시 임의적 파산선고)

**회생계획 수행**

**회생 절차 종결**

# 우리하나로의 기업회생업무

Corporate Rehabilitation

# 우리하나로의 기업회생 업무

Corporate Rehabilitation

Corporate Rehabilitation

## 기업회생 업무 실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구)법정관리회사인 (주)우방의 매각 주간사로 선정된 이래 2008년 초부터 누적된 경기불황과 기업 구조개선 필요성 등에 의한 기업회생사건의 증가를 예상하고 그 준비를 하였습니다. 2008. 5. 9. 주식회사 디디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시작으로 다수의 기업 및 개인 회생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왔으며, 현재도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다수 기업의 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기업회생 사건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아래 기업들의 회생신청 및 인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디디엠, (주)한성에이스판넬, (주)대륙전선(서울전선 인수합병), (주)씨앤우방(SM그룹 인수), (주)디케이에스, (주)대영산업 제3자 회생신청, (주)에이스전자, (주)서진, (주)한겨레철강, (주)삼성그린테크, (주)동광스포츠헤드, (주)청운티앤에프, 보고이미지텍, (주)비와이푸드시스 템, (주)용가네식품, (주)엘림푸드, (주)성진씨앤씨, 백천의료재단, (주)백산푸드시스템, (주)디트브이인터랙티브, (주)태복기계, (주)승호테크, (주)세라실, (주)에스지, (주)에스원, (주)에스씨씨, (주)마그텍, (주)연일금속, 제이앤비, (주)두성디에스, 테마한의원, (주)우진건설, (주)기산, (주)세원테크, (주)동현종합건설, 자연의원, 동아종합인쇄, (주)대명, (주)선우테크, (주)준하이테크, 달서미즈맘병원 외 다수

### 2. 회생기업 M&A 업무

-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방 매각주간사 업무
- 정리회사 부원인터내셔널 매각 관련 법률자문
- 주식회사 디디엠 매각자문 업무
- 주식회사 대륙전선 매각 관련 자문 및 회생계획 작성
- 주식회사 성진씨앤씨 매각주간사(안진회계법인과 컨소시움)
- 백천의료재단(세동병원) 매각주간사(다산회계법인과 컨소시움)
- 세인트웨스턴 호텔 매각주간사
- 주식회사 에스지 매각주간사(안진회계법인과 컨소시움)

## 회생기업사건과 우리하나로의 강점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환율상승에 따른 기업도산의 위험성 증가로 인해 향후 기업회생 신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독보적인 기업회생업무 처리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축적된 기업회생사건 처리 경험의 체계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회생사건 처리에 특화된 효율적 업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사건은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전반과 관련된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함께 기업회계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기업회생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법무법인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기업회생업무를 전담하여 필요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기업회생사건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효율적인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회생신청서,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경기에 대한 넓은 시각과 대구 경북지역의 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생신청 이후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 제3자 인수를 통한 인수합병의 가능성 타진, 회생계획안 인가 과정에서 채권자 동의를 위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생절차 전 과정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업무는 일반 소송사건과 달리 법률과 회계 업무가 결합되어 있고, 기업의 생존여부를 둘러싸고 매우 다이내믹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문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 그에 기초한 신속한 대처가 회생 업무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회생개시 신청, 회생회사 매각자문,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업무 노하우를 통해 회생법원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행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통합적 업무수행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생사건 절차 흐름도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p><b>회생절차 개시신청 비용</b></p>	<p>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수입료로 지출되며, 자산이나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b>법원에납금</b></p>	<p>2,000만원 정도가 기본적인 비용이며, 자산이나 매출액에 따라 1억 까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납금은 주로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용역비로 사용됩니다.</p>
<p><b>회생계획안 작성 비용</b></p>	<p>1,500만원 정도가 기본적인 비용이며, 자산이나 매출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회계법인에서 수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p>

회생신청에  
필요한 자료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서로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주명부, 회사 연혁, 대표이사 이력서, 임직원 현황, 조직도, 카탈로그나 브로셔 등이 필요합니다.

**2. 재무상황**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문서로 직전 5개년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자산 내역, 부채 내역, 채무 현황(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 공익채권)등이 필요합니다.

**3. 자산의 상세내역**

회사의 자산상태에 관한 문서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 등 등록이 가능한 자산의 등록원부 사본,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목록 및 각 지적재산권의 등록증 등 증명서류, ISO 인증서, 기술인증 관련 자료, 제품설명서, 기타 회사의 영업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4.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회생개시 신청을 한다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생개시신청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 신청 시  
유의할 사항

보증인은 회생개시 결정이나 회생인가 결정에 의하여 채무조정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대표자나 기타 보증인들의 개인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회생과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이후 회생을 해야 합니다.

회생 개시 신청 직전에 특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관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로서 회생 개시 결정 및 인가결정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회생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적시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료나 법원에납금 등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회생개시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면 지출은 전면동결하고 채권은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회생 및 M&A팀 전문인력

Professional Personnel



변호사 · 변리사

**성상희**

M&A, 기업회생, 기업자문/특허



변호사 · 회계사

**최정원**

기업회생, 조세, 기업자문



변호사

**류제모**

M&A, 기업회생, 노동

-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홈페이지 <http://www.hanalaw.co.kr>
- 기업회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alaw114>

## 회생절차개시신청 소명자료 목록 (예시)

Materials for Explanation List

· 소갑 제1호증	정관
· 소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 소갑 제3호증	관계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 소갑 제4호증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소갑 제5호증	주주명부
· 소갑 제6호증	회사연혁
· 소갑 제7호증	대표이사 이력서
· 소갑 제8호증	임직원현황
· 소갑 제9호증	조직도
· 소갑 제10호증	재무재표(5개년)
· 소갑 제11호증	자산상세내역
· 소갑 제12호증	부채상세내역
· 소갑 제13호증	회생담보권 현황
· 소갑 제14호증	회생채권 현황
· 소갑 제15호증	추정영업현금흐름
· 소갑 제16호증	추정손익계산서
· 소갑 제17호증	청산대차대조표
· 소갑 제18호증	주주총회의사록
· 소갑 제19호증	ISO 9001 인증서
· 소갑 제20호증	시험성적서
· 소갑 제21호증	회사제품설명서



# 채무자 회사를 위한 회생절차 해설

Regeneration procedure Explanation

## 회생절차 해설

일시적 재정파탄으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있는 기업에 관하여 그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이익인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을 현재 청산할 경우 남는 재산적 가치인 청산 가치보다 큰 경우에 법원에서 심사한 후 회생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 1. 신청대리인의 선임

일시적 재정파탄으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있는 기업에 관하여 그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이익인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을 현재 청산할 경우 남는 재산적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법원에서 심사한 후 회생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 2. 회생개시신청 및 개시결정

#### 가. 회생개시신청

회생절차를 진행을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요, 연혁, 사업현황, 재무현황,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가능성, 채권자별 채권금액 현황, 부채 상환 계획 및 이행 가능성, 회생의 경제적 가치(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등을 기재합니다.

#### 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예납명령

- 1)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의 접수할 때 채무자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보전처분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정지를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신청까지 같이 접수합니다.
- 2) 보전처분 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일 내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발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보전처분이 행해지면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처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해 지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 3) 법원은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과 동시에 예납금의 납부를 명하는데, 예납금은 신청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주로 조사위원 등의 보수나 절차비용으로 사용됩니다.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생신청이 기각됩니다.

#### 다.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

이후 법원은 회생개시결정을 위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결정 요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담당 법관은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사업의 전망이 있는지, 종업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현장검증과 대표자심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 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심사한 후, 채무자 회생법이 정한 필요적 기각사유가 없으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관리인 및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회생개시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 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Regeneration procedure Explanation

### 3. 채권채무의 확정 및 기업가치의 조사

#### 가. 채권채무의 확정

- 1) 채무자의 회생을 통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관리인은 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신고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과 채권자의 권리신고가 중복되거나 충돌할 경우 신고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 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그 존부와 범위의 인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시부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채권자의 이의나 관리인의 부인을 통해 신고한 채권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특별조사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채권을 확정합니다.
- 3) 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4) 이 때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조사확정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채권자는 그 권리가 상실되는 실권의 불이익을 입습니다.

#### 나.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 1)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및 회생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기업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 역할은 일반적으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선임되는 조사위원이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나갈 때의 경제적 가치)와 청산가치(채무자의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한 금액)를 산정하게 되는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만 회생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2)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실태와 기업가치를 평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다. 채무자의 재산 확보

채무자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유지·보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① 부인권 제도(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의 위기상태에서 행한 재산의 은닉행위나 편파변제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일탈하였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 ② 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재판 제도(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액수를 회생절차 내에서 조사하여 확정하는 제도), ③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행사 제도(회생절차 개시 전에 쌍무계약이 체결되었고 쌍방이 아직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 라면 관리인에게 그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고 계약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④ 상계권의 행사 제한 제도(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까지만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채권자 등이 부당하게 자신의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4. 관계인 집회 및 회생계획안의 제출 및 결의와 인가

##### 가. 제1회 관계인 집회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알리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절차 진행내역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기업가치 등에 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회생절차의 계속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나.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사업구조 재건과 그에 따른 수익예측을 바탕으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를 변경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등을 제시하게 되는데, 회생수행기간인 10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여 얼마를 벌어 얼마의 채권을 갚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다.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 1)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심사하여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는데,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 집회와 이의 수용여부의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 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날에 개최됩니다.
- 2) 그리고 채권의 조사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기일인 특별조사기일도 같은 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 회생계획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결의는 보통 회생담보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2/3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2/3이상 동의 필요), 주주조(출석한 주식 총수의 1/2 이상 동의 필요)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 라. 회생계획인가결정

- 1)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선고되면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경됩니다.
-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거나, 추가 협상 등의 여지가 있어 관리인이 속행기일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계인의 결의를 거쳐 속행기일을 지정합니다.

#### 5. 회생계획의 수행

가.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지체없이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는 회사의 정관변경, 채권의 출자전환, 임원교체 등 기업구조에 관한 조치와, 정상적인 사업운영이나 자산 매각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회생계획안이 명백하게 무리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6.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합니다.

**대구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501호(범어동, 우정법원빌딩) T. 053)756-4600 F. 053)588-3806

**구미사무소**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7, 3층 301호(송정동, 용은빌딩) T. 054)457-2626 F. 054)457-2696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402호(서초동, 용원빌딩) T. 02)522-4601 F. 0303)0955-3066

**hanalaw**

<http://www.hanalaw.co.kr>